

姜金鍾論

김 영 화*

— 목 차 —

1. 생애와 사상
2. 작품 세계
3. 체험과 고향의식
4. 강금종과 제주문학

1. 생애와 사상

강금종(1917~1991)은 제주시 삼양에서 태어났다. 삼양과 가까운 화복소학교를 나온 후 1936년에 일본의 오사카(大阪)로 건너갔다. 오사카에는 제주 출신 동포들이 많이 살고 있었고, 그 가운데는 강금종의 친척들도 있었다. 세살 때 아버지를 여윈 그는 고향에서 학업을 계속하기 어려워 그 당시 한국 학생들이 그렇듯 스스로 학비를 벌어서 공부해야겠다는 생각으로 건너간 것으로 보인다.

오사카에서는 신문배달등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 게이항(京版) 상업학교를 나왔다. 그리고 일본대학 부설 대판전문학교 법과에 입학했다. 이 학교에는 제주 출신인 김병목, 한만숙, 고봉조, 부두전 등이 다녔고, 강금종은 한국인 학우회 위원으로 있었기 때문에 이들과 교류하게 된다. 그는 1940년 초에 김병목의 소개로 매형이 경영하는 금속제작소의 직원으로 있는 제주 출신 김봉

* 국어국문학과 교수

각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이 여섯 사람은 서로 어울려 다니면서 일종의 민족 운동을 하기로 뜻을 모았다. 그래서 모임의 명칭을 처음에는 興亞會라 했다가 1940년 5월 鷄林同志會로 바꾸었다.

1940년이던 중일전쟁이 일어난 지 4년 후이고, 일본이 대륙침략이 노골화되던 시기다. 점차 전시체제를 갖추고 한민족의 언어와 정신을 말살하던 시기다. 전운이 감돌면서 일본 경찰의 감시가 강화되고, 內鮮一體를 내세우면서도 한국인을 후메이센진(不逞鮮人)이라 멸시하던 때이다. 따라서 한국인들은 민족적 울분을 삼키면서 살지 않을 수 없던 시기이고, 젊은 학생들은 민족의식과 민족적 자각이 싹틀 수 있는 상황이다.

1940년 5월 이들은 김봉각의 집에 모여 그들이 해야 할 당면과제와 실천사항등을 정했다. 그 가운데는 1) 회의 때는 반드시 모국어를 쓸 것, 2) 젊은 남녀(재일동포)들에게 항일의식을 고취시킬 것, 3) 현하 급박한 국제 정세에 즈음하여 한민족의 자주독립을 쟁취할 것 등 몇 가지를 정한 것이다. 20대 초반의 젊은이었던 이들은 민족적 차별에 분노를 느끼고 조국의 독립을 쟁취해야 하겠다는 생각을 가졌던 것이다. 그것은 그들의 활동배경에서 알 수 있다. 1) 한국인의 사회적 지위는 극도로 비참하다. 2) 한민족의 행복과 자유는 한국 독립 외에는 절대로 찾아 볼 수 없다고 당시의 상황을 진단하고 있다.

계림동지회가 조직된 후 이들은 일본에 살고 있는 한국인들이 모인 곳에서 은근히 항일의식을 고취하는 일을 계속했다. 그런 활동이 8개월쯤 계속되자 일본 경찰이 눈치채고 1941년 2월 모두 체포되었다. 강금종도 쓰루하시(鶴橋)경찰서에 연행되어 회유와 협박을 당하다가 결국 재판에 회부되어 2년 형 언도를 받고 복역 후 1944년 4월 2일 석방되었다. 죄명은 치안유지법 위반이다.¹⁾

그가 문학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옥중생활에서 비롯된다. 그는 감방에서 불교관계의 서적을 읽는 한편 문학 작품도 읽게 되었다. 그가 읽은 것은 주로

1) 강금종, “계림동지회사건” (『월간중앙』, 1980. 2) p. 550. 및 김찬흠, “일제침략사” (『제주도지』 1권, 1993. 2) pp. 1157~58. 참조

일본 근대소설이다. 나쓰메(夏目漱石), 구니기다(國木田獨步), 시마자키(島崎藤村), 오자키(尾崎紅葉), 도꾸도미(徳富蘆花) 등 주로 명치, 대정기의 문학이다. 이 외에도 특히 필벽을 좋아해서 「대지」 등을 읽었다. 그가 후일 작가가 된 것은 그의 수형생활과도 관계가 있다.

1944년 4월 석방된 후 잠시 오사카에 있다가 누님이 있는 사할린으로 건너간다. 그 때 그의 누님은 사할린에서 조그마한 사업을 벌이고 있었다. 누님이 경영하는 사업장에서 경리 일을 보던 충청남도 조치원 출신인 아가씨가 있었는데, 누님의 소개로 둘은 결혼한다. 그 무렵 2차대전도 종말에 가까웠고 사할린에는 소련군이 진주한다는 소문이 돌았다. 그래서 강금중은 해방되던 해인 1945년 3월 서둘러 귀국, 처가가 있는 조치원에 정착하게 된다. 그는 거기서 해방을 맞았고, 해방 뒤에는 학교 교원, 기자 등을 지내기도 하였다.

강금중은 1963년 마흔 여섯 살 때 「傷痕」이 「자유문학」에 추천되어 문단에 등단했다. 그러나 해방 후인 1948년에 창작집 「어린 天使」(아세아출판사)를 내놓았고, 1955년 대전방송국 문예 작품 공모에서 「아내의 입장」이 당선되었다. 또 1959년 충북신문 신춘문예에 동화 「아저씨의 선물」이 당선된 일이 있다. 그리고 창작집으로는 1956년에 「暖流」(충남문화사)를 내놓기도 했다. 문단에 등단한 후에는 창작집으로 1966년에 「미움의 세월」(활문사), 1972년에 「먼 旅路」(월간충청사)를, 수필집으로 1969년에 「홀려간 이웃들」(새한출판사)을 내놓았다.

2. 작품 세계

강금중의 소설은 크게 세 가지 경향이 있다. 첫째는 일제 말울 배경으로 우리 민족이 당했던 아픔을 그린 소설이고, 둘째는 농촌과 농민들의 세계를 그린 농촌소설이며, 셋째는 등장인물들의 반항을 통해서 한국 사회의 현황을 다룬 소설이다.

이 가운데 일제 말울 배경으로 우리 민족이 당했던 아픔을 그린 작품으로 등단작 「傷痕」을 비롯하여 「血脈」, 「애국자」 등이 있다. 이 작품들은 그의 세

계를 엿볼 수 있는 작품으로 점점이 필요한 소설들이다.

「상흔」은 일제 말, 군항 공사장 주변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의 고통을 그린 소설이다.

그들의 품팔이 공사장이란 다름 아닌 군항 공사장이다. 말하자면 소위 대동 아전쟁이 일어나면서 그들은 이 XX섬에도 군항의 필요를 느꼈던 것이다. 인구 몇 백만인 섬이런만 그들은 전략상 절대적인 요새지라 단정했던 것이다. 남해 한 북판에 접해 있는 이 섬은 멀리 대만과 일본의 중간 요새지였다. 오년 계획이란 대규모의 공사로써 여기에 동원된 인부만도 자그만치 수백에 달하는데 기술계를 제외하고는 모두가 조선사람들이다. 하루 열시간이라는 중노동인데 최고 품값이 사십전이 넘질 않았다. 그러나 그들은 그것도 화수분이라 했다. 조만간에 징용제가 될 텐데 무슨 잔소리냐고 큰 소리를 쳤다. /주권 없는 민족 /생각하면 소름이 끼친다.²⁾

군항 공사장에서 하루 열시간 중노동에 저임금으로 시달리는 한국 사람들의 아픔이 그려져 있다. 군항을 건설하는 곳이 섬이고, 그 섬이 1) 남해 한북판에 있으며, 2) 대만과 일본의 중간에 있다고 되어 있다. 지리적 위치만 보면 제주도에 해당된다. 그러나 인구가 5, 6만이라는 점이 달라 허구로 설정된 섬이라는 생각도 있다. 하지만 섬에 사는 사람들이 군항 시설 당시에 어떤 상황 속에 있었는가를 소설을 통해서 읽을 수 있다는 점에서 제주와 관련이 있는 소설이라고 볼 수도 있다. 역사의 기록으로서가 아니라 소설을 통해 제주인들이 살아온 상황을 엿볼 수 있는 소설이다.

「애국자」는 일제 말 일본인들이 神器의 일종으로 모시는, 야다노가가미(八咫鏡)를 아내의 병을 고치기 위해 훔쳤다가 징역을 산 교사의 이야기다. 그런 교사가 해방이 되자 옥에서 풀려 나와서는 그의 전력을 모르는 곳으로 가서 자칭 애국자연한다. 이 소설은 그것을 풍자한 소설이다. 이 소설의 결말은 이렇게 끝난다.

김수인 교사는 며칠이나 망설이다 학교에 있는 <야다노가가미>를 훔쳐 낸

2) 창작집 『미움의 세월』(활문사, 1967) p.158.

것이였다. (중략)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김수인 교사가 혹독한 고문을 받게 된 것은 두말할 것도 없다. 게다가 그들이 말하는 소위 불경죄를 적용, 최고의 형을 받은 것도 또한 두말할 것도 없다. /그러나 그 후 달포가 채 못가서 8·15 해방이 되면서 김수인 교사는 옥중에서 풀려 나왔다. 그러면서 그는 멀리 강원도인가 어느 지방에서 XX위원회 위원장이란 큰 감투를 쓰고 자칭 애국가 행세를 했다는데...”

항일을 하고 그 때문에 감옥에 간 것이 아니라 미신을 믿고 <야다노가가미>를 훔쳐 징역을 살았던 자가 해방 후에 애국자로 행세하는 일이 있었고, 스스로 수형생활을 했던 이 작가로서는 그런 현실과 세태에 실망했을 것이다.

「혈맥」은 해방 직전의 제주도가 배경인 소설이다. 이 소설의 주인공인 석홍은 절도죄로 복역한 후 제주도로 귀향한다. 그는 고향사람들로부터 외면당한다. 고향에 있을 때도 불량해서 사람들이 그를 싫어했었는데, 고향을 떠나 서울에 올라간 후에도 타락한 생활을 하다 남의 물건을 훔쳐 절도죄로 복역했기 때문이다. 대신에 그의 동생인 석이는 성실한 생활을 했다. 때문에 동네 사람들로 부터 신임을 받는다. 그러나 일제 말에 경방단이 조직되자 청년부장을 맡고 나서 적극적으로 일제에 협조한다. 특히 일본 형사인 가노의 심복이 되어 그가 시키는 대로 일을 처리한다. 이런 형제가 일제 말에 동생은 친일을 하고 형은 그 반대편에 서서 갈등을 벌이는 이야기다. 불량했던 형은 민족의 편에서서 일제와 싸우고, 성실했던 동생은 친일로 치달아 민족을 배반하고 있다는 것을 드러낸 소설이다. 이 소설에서는 일제 말 제주의 상황을 이렇게 묘사한다.

운동장에는 어느 사이에 수백이 넘는 남녀노소들이 각기 대열을 이루고 있었다. 휘황한 전등 아래 가노의 지휘도가 번쩍거린다. /얼마 후 대원들의 점호가 끝나고 이어서 일장 훈시가 시작되었다. 가노는 말끝마다 황국신민이요, 일시동인이요, 멸사봉공 등으로 시종일관했다. 그리고 불순분자들이 있으면 가차없는 엄벌을 내린다는 공갈협박으로 나오기도 했다. (중략) /훈련은 석이의 총 지휘로 시작되었다. /그리고 남녀노소별로 각각 간단한 기초 훈련이 벌

3) 창작집 「먼 여로」(월간충정사, 1972) pp.28~29.

어졌다. 얼마나 다뤘기에 척척 잘도 들어 맞는다. 가노는 이때금 지휘봉으로 대원들의 옆구리를 쿡쿡 찌르며 정신을 차리라고 호통을 치자, 덩달아 석이도 그랬다. 그 으시대는 끝이란 정말 가관이였다. (중략) 지금부터는 황국신민서사를 암송할 차례였다. 큰 일인 것이다. /지난 번 훈련 때 가노가 명령한 것으로 만일에 암송을 못하는 날이면 그들은 죽어나는 것이다. 암송하겠다고 맹세했기 때문이다. /황국신민서사는 맨 첫머리인 김상호 노인부터 시작되었다. 암송할 대상자 거개가 노인들과 부녀층이었다. /김상호 노인은 첫 몇 마디를 하더니 그만이었다. 오십이 넘는 그가 잘 외울 리가 없다. (중략) 모두 열 다섯 중에서 합격자는 남녀 합해서 다섯이었고 불합격자는 열이었다. 당초의 약속대로 불합격자는 어떠한 벌이라도 달갑게 받아야 하는 것이다. /“무릎을 꿇었!” /가노의 버락이었다. 가노의 손에는 육중한 목총이 불끈 쥐어져 있었다. (중략) 가노의 불끈 쥐 목총이 첫머리인 김상호 노인의 등으로 번개처럼 날았다.⁴⁾

일제가 한국인(제주인)을 어떻게 취급하고 있는가를 보인 대목이다. 이런 가노에게 협력한 것이 착실하다는 동생 석이이고, 가노에게 몽둥이를 들고 두들겨 패준 것은 불량하다는 형 석홍이다. 이 때 군중들은 석홍이의 편을 들고 그에게 동조한다. 김동인의 「붉은 산」에 등장하는 삼(익호)과 비슷한 인물이 형 석홍이다.

이 소설에서는 착하다는 동생은 약삭빠르게 친일하면서 살아가고, 불량하다는 형은 도리어 같은 동족이 곤경에 처했을 때 발벗고 나선다는 것이다. 이 두 인물을 통해서 일제 때 한국인의 유형을 읽어낼 수가 있고, 이 소설의 배경이 제주라는 점이 흥미가 있다.

3. 체험과 고향의식

1948년 2월 아세아출판사에서 나온 창작집 「어린 천사」에는 「오형의 영전에», 「어린 천사», 「사십전», 「번민의 밤», 「어린 것의 죽음», 「흘러온 농민», 「운명», 「석송이란 사람», 「생일」 등 9편이 실려 있다.

이 작품들은 해방 후부터 1948년까지 해방 공간에 씌어진 작품들이다. 예술

4) 같은 책, pp.218~219.

적 완성도가 부족한 점은 있으나 이 작가의 세계를 이해하는 데는 도움을 준다. 그 가운데 표제작인 「어린 천사」는 강금종의 도일과 일본에서의 체험을 바탕으로 씌어진 작품이다.

내가 일본으로 공부하러 간 것은 지금으로부터 약 이십년 전 즉 내가 열여덟 살 되는 해다. 그 때 마침 내 큰 누님이 대판에 계시었기로 물론 나는 누님을 믿고 간 것만은 사실이다. 허나 절대로 누님만을 믿고 간 것도 아니다. 그런 탓인지 나는 겨우 두달을 살고 누님집을 떠나 어떤 신문점의 배달원으로 들어가 일을 보면서 주간을 중등학교 편입 예비강습소에 다니기 시작했다.⁵⁾

이 인용문은 이 작가 스스로의 체험의 반영이다. 동시에 그와 동연배의 제주인들의 체험과 삶의 반영이라고 할 수 있다. 실제로 그가 쓴 논픽션 「계림동지회사건」을 읽으면 그와 동연배의 제주인들의 일본에서의 삶이 소개되었는데 이 인용문과 비슷하다.

이 소설의 주인공은 고향에 있는 누이 동생을 부르고 누이 동생으로 하여금 낮에는 일하면서 밤에는 학교에 다니도록 한다. 이런 누이가 자기가 병들어 누워 있을 때 극진히 자신을 돌본다는 이야기다. 결국 어린 천사는 자기의 누이 동생을 두고 한 이야기다. 소설 자체는 소박하다. 그러나 이 소설을 통해서 일본에 건너간 제주인의 삶이 형상화되었다는 데 관심이 간다.

그의 고향은 제주도. (중략) 여름이면 쌍돛대 높이 단 고깃배에 몸을 싣고, 망망한 창과를 해매이던 시절, 은빛 같은 모래밭, 풍만한 해녀의 휘파람소리, 봄이 오면 정다운 목동들과 호마에 몸을 싣고 피리를 불며, 미지의 세계로 달리며 청운의 꿈을 그리던 낭만의 시절⁶⁾

소설 「혈맥」가운데서 인용한 것이다. 강금종은 1930년대에 제주를 떠나 오랫동안 외지에 있었다. 그가 고향에 대한 이미지를 갖고 있다면 고향을 떠나던 무렵의 제주도-1930년대의 제주일 가능성이 높다. 이 인용문 속의 제주의 이미지는, 그러므로 1930년대의 제주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다.

5) 창작집 「먼 여로」(아세아문화사, 1948), p. 11.

6) 「먼 여로」 p. 205.

그는 고향을 자주 찾지 못했다. 그러던 그가 오랜만에 고향을 찾은 일이었다. 그것을 글로 쓴 것이 두 편 있다. 하나는 1969년 5월 25일자 『자유신문』에 실었던 「귀향-제주도에 와서」이고, 다른 하나는 1983년 11월 『백수문학』 17집에 실린 「귀향」이다. 이 두 편의 글을 통해서 강금종의 고향의식을 읽을 수 있다.

고향을 떠나온 지 어언 30년. /여름이면 쪽배에 몸을 싣고 어찌면 자기만이 바다의 왕자인 양 망망한 바다를 헤매던 일이라든가 모래 위를 뛰고 덩굴고 또는 씨름판을 벌여 누가누가 장사냐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기도, 때로는 뚱뚱보 그 누구랑 키다리 아무개한테 따귀를 맞아 엉엉 고래 울음을 터뜨리며 한없이 슬퍼 울기만 하던 나의 어린 시절. /구리빛에 흡사한 건장하고 풍만한 몸집의 해너들은 곡예사 그대로 갖가지 재롱을 구사하고 파도는 춤을 추고 갈매기는 노래하고 어린 소년은 손뼉을 치고… 넓고 푸르른 평야 그 어디에선가 은은히 들려오는 목동의 피릿소리에 소년의 가슴은 마냥 부풀어 낭만은 무르익어 가고…⁷⁾

이 인용문은 그가 고향을 떠나기 전 소년시절의 회상이다. 따라서 이 인용문은 그의 소년시절 고향의 이미지가 그대로 투영되어 있다. 이 글을 읽으면 그는 소년시절에 대한 그리움이 있고, 고향을 그리워하고 있다는 것이 드러난다. 이것은 고향을 떠난 제주인들의 생각을 대변한 것이기도 하다. 그런데 그는 왜 고향을 자주 찾지 않았을까.

고향을 등진 지 30년이 흘렀는데도 귀향 회수를 보면 불과 세번째로 그 첫 번째가 어머니가 돌아가신 때였고, 두번째는 8·15해방 후고, 이번이 세번째가 되는 꼭 10년만인가. /그러고 보면 고향이라기보다 객지라는 감이 앞서고 보니 감회가 새롭고 허전한 마음 어디다 가눌 곳이 없다. /나는 며칠 후엔 고향에 다녀오겠다는 뜻을 아내에게 얘기했더니 아내는 첫말부터가 천만의 말씀이라면서 냉큼하여 동의해 오지 않는다. /근 10년만에 귀향하는 사람이 왕복 여비 기원한 가지고 무슨 체면으로 가겠느냐는 것이 그녀의 반대 이유인 것 같다. 만엔 지당한 발언이리라. /조상의 성묘와 여러 친족 친지들을 찾아간다

7) 「귀향-제주도에 와서」 수필집 『홀려간 이웃들』 (새한출판사, 1969) p. 65.

는 사람이 기만된 수중에 없이 무슨 낮짜기로 가라는 생각을 하니 아내의 말에 냉큼 수궁이 간다. 얼굴이 화끈 달아 오른다. /무슨 큰 벼슬을 했거나 치부를 했거나 해서 금의환향을 한다면야 그 얼마나 멋졌하고 모두들 우러러 주련만 빈손으로 고향길을 찾아든다는 것은 정녕 서글픈 일이라 하겠다. (중략) 그러나 나는 가고픈 내 고향을 다녀 와야만 한다. /어떤 관직도, 치부도 못한 가난 속에서 허덕인다 해서 고향에 못갈 바도, 그 뉘가 비웃을리도 없는 것이다. 아니 혹자가 비웃는다 손치더라도 어쩔 수 없는, 그런 대로 받아 들일 수밖에 도리가 없으리라. /아내가 뭐라고 떠벌리건간에 그에 관여할 바도 또한 신경을 쓸 필요도 없다는 내 나름의 단안을 내리면서 마음은 외줄기 향수에 젖어 보는 것이었다.”⁸⁾

고향을 떠나 살고 있는 사람의 심경과 처지가 잘 드러나 있다. 소설가인 강금종도 일반사람들처럼 고향을 자주 찾고 싶어도 돈이 있거나 출세해야 한다는 무거운 마음—금의환향에 대한 꿈과 강박관념이 지배하고 있어 고향을 찾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드러난다. 이런 정서는 한국인이면 누구나 갖기 쉬운 것이다. 고향에 있는 사람들도 타향에 가 있는 사람이 출세하거나 돈을 많이 벌어야 화제가 되고, 고향에 무언가 도움을 주기를 은근히 기대한다. 그것이 지난 날 한국인 일반이 갖는 정서이고 강금종도 이 세계에 갇혀 있다. 그것은 이 작가 한 사람의 것이 아니라 제주를 떠나 타향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의 것이기도 하다. 강금종은 1983년에도 고향을 다시 찾았고 글을 남겼다.

고향이란 말 뿐이었지 부모형제가 있을 리 없고 가까운 집안은 재지로 나와서 먼 일가 친척과 조상의 묘소들만이 산재해 있을 뿐이다. 조상의 묘소 벌초는 집안 동생되는 사람이 하기로 돼 있기 때문에 꼭 고향에 다녀와야 한다는 절대적인 원인은 없는 것이다. 그러나 조상의 여러 묘소를 집안 동생이라 해서 몇 십년을 맡겨 놓고 무관심하다는 것도 양심상 말이 안 된다. 들리는 말에 따르면 벌초를 해주던 그가 세상을 떠났다는 소문이고 보면 이번에는 가야만 되는 것이다. (중략) 나는 이 날 조상의 묘소를 벌초하던 집안 동생이 죽으면 서는 그 아무도 벌초를 앓고 방치하고 있다는 사실에 놀라기에 앞서 불효막심한 자아를 얼마나 원망했는지 모른다. 근 5년 가까이 벌초를 앓고 방치한 조

8) “귀향-제주도에 와서” 수필집 『홀려간 이웃들』 (새한출판사, 1969) p.62-63.

상에게 감히 무슨 면목이 서겠는가.⁹⁾

이 인용문을 읽으면 한국인, 좁게는 고향을 떠난 제주 사람의 의식과 정서가 드러난다. 대체로 고향을 떠나 사는 사람들이 고향을 생각할 때는 선조의 묘가 먼저 떠오른다. 나이가 많은 사람들일수록 그렇다. 고향에 선조의 묘가 없거나 부모형제가 없다면 특별히 고향을 생각하지 않게 된다. 그들이 고향을 생각하게 되는 것은 어린 시절에 대한 그리움도 없지 않지만 선조의 묘와 친척을 소중하게 여기는 유가적 전통이 남아 있기 때문일 것이다. 강금종도 예외가 아니다.

4. 강금종과 제주문학

강금종은 해방 후부터 작품을 발표해 왔다. 그러나 대부분 충청남도를 중심으로 발간되는 잡지 또는 동인지에 발표되었다. 충청남도에서 오래 살고 있기 때문에 그의 소설 배경이 충청도 농촌이 많고, 작품세계도 충청도적 요소가 짙다. 그리고 문학 활동도 그 지방에서 이루어졌고, 1969년에는 충남문화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그 점에서 그의 문학은 충남문학의 범주에 들어갈 수 있다.

그러나 그의 작품 가운데 제주인의 의식과 정서가 표현된 작품들이 있다. 위에서 검토한 몇 작품은 거기에 해당된다. 그리고 일제 말 제주의 여러 상황이 그의 작품에 묘사돼 있어 제주문학의 관점에서 그의 문학은 검토할 여지가 있다.

문학이란 무엇인가. 표현매체가 무엇이든, 작품을 쓰는 방법이 무엇이든 궁극적으로는 인간의 의식과 정서의 표현이 아닌가. 따라서 작가의 의식과 정서, 그리고 작품을 읽는 독자의 의식과 정서가 작품 평가의 주요한 요소가 되지 않을까. 글을 쓴 사람의 의식과 정서가 문학을 검토하는 자리에서 비중이 높아질 전망이다. 따라서 그의 문학 속에 제주인의 의식과 정서가 표현된 작품이 있고, 그것이 우리가 흥미를 갖게 되는 이유다.

9) "귀향" (『백수문학』 1983) p. 122.

〈參考資料 I〉

姜 金 鍾

豫審終結決定

本籍 朝鮮全羅南道濟州島濟州邑三陽里2072番地

住居 大阪市東成區新今里南8丁目398番地

木村順太郎方

핸드백口金職工

姜 金 鍾 곧

晋 山 金 鍾

大正6年12月27日生

右者에 對한 治安維持法違反 被告事件에 대해 豫審하여 다음과 같이 決定함.

主文

本件을 大阪地方裁判所의 公判에 부침.

理由

被告人은 다음에 揭示하는 事實에 대해 公判에 부침만한 犯罪의 嫌疑가 있는 것으로 본다.

被告人은 本籍地에서 태어나 3歲 때 父親을 잃고 오로지 實母의 손에 貧困裡에 養育되며 昭和3年4月 (12歲 때) 그 母親과 함께 來阪하여 大阪市 猪飼野 尋常小學校 3學年에 다니다가 半年余만에 歸郷하여 隣村의 普通學校 第4學年에 들어가서 5學年을 終了함과 同時에 退學하여 家事를 돕고 있는 바 昭和11年4月 苦學의 目的을 갖고 再次 單身 來阪하여 이래 店員, 新聞配達人, 핸드백口金職工 등의 職을 얻고 한편 大阪基督教青年會英語學校, 日本大學大阪專門學校 法科夜間部別科 등에서 공부하고 昭和15年1月 京阪商業學校夜間部3學年에 入學하여 翌年 3月 同校를 卒業했었는데 昭和15年初頃부터 마르크스主義에 關心을 가지고 同年 4月頃부터 文獻을 繙讀하기에 이르렀으나 일찍부터 朝鮮人으로 差別待遇를 당했던 體驗과 朝鮮에 義務教育制度가 施行되어 있지 않으며 朝鮮人이 內地渡航을 할 때 渡航證明書를 必要로 한다는 등, 日本政府의 朝鮮人에 對한 差別的 措置 및 日本人의 朝鮮人에 대한 侮蔑의 處遇의 事實을

聞知했던 것 등에 의하여 漸次 民族의反感과 不滿을 깊이 갖고 있을 적에 때 마침 同年4月下旬頃 일찍부터 朝鮮獨立을 希求하고 있던 同鄉青年 金奉珏 곧 岡田庄祐를 알게 되어 同人으로부터 朝鮮獨立을 위해 蹶起하도록 煽動받자 이에 感動하여 드디어 朝鮮民族에게 참다운 自由와 幸福을 賦與하기 위해서는 朝鮮으로 하여금 天皇의 統治權下로부터 離脱케 하여 새로이 朝鮮民族에 의한 獨立國家를 建設하는 艱難에는 없다고 思惟하기에 이르러 同人등과 함께 目的 達成을 위해 活動할 것을 決意하여

一. 昭和15年5月初旬 大阪府中河内郡巽村西足代454番地の 上記 岡田庄祐方에서 同人 및 金丙穆 곧 金村丙穆, 高奉朝 곧 高山森造, 韓滿淑 곧 西原滿淑 등 4名과 會合하여 同人등과 함께 朝鮮獨立運動 展開에 관한 根本方針에 대해 密議를 거듭하고 난 끝에 朝鮮獨立의 目的 達成을 위해서는 우선 낮은 一般朝鮮人大衆의 民族意識 啓蒙과 昂揚을 圖謀하여 獨立氣運의 釀成에 努力하여야 하고 이것은 우리들 朝鮮人青年의 責任으로 우리들은 그 指導者로서의 實力을 養成하기 위해 讀書會를 갖고 이것을 通해서 相互의 知識向上을 圖謀하여 이로써 朝鮮獨立運動의 指導者로서의 必要한 知識修得에 努力하여 窮極의 目的 達成에 盡瘁할 것 등을 協議 決定하여

二. 同月 中旬頃 大阪市 東成區猪飼野中5丁目 20番地の 金村丙穆方에서 同人及岡田庄祐, 高山森造, 西原滿淑의 4名과 會合하여 前記 根本方針에 立脚, 그 위에 當面 方針에 관해 檢討한 끝에 東京의 朝鮮留學生이 그들을 가져 朝鮮獨立 達成을 위해 必要한 事項에 관해 研究 討論하고 있음에 呼應하여 우리들도 각자 研究題目을 選擇, 專門的으로 研究하여 그 결과를 우리들의 會合에서 發表하여 意見의 交換을 하고, 이로써 民族指導者로서의 實力養成에 노력할 것, 「朝鮮의 前途」, 「마르크스主義」外, 2項目을 각자 研究題目으로 하여 被告人 自身은 마르크스主義에 관해 研究한 結果를 發表할 것 등을 協議 決定하고 그 위에 우리들의 會合은 絕對 秘密로 할 것, 우리들의 會合에서는 朝鮮語를 사용할 것, 會合의 日時 場所는 미리 그 前의 會合 때 決定할 것, 새로이 會員을 늘릴 때는 人物을 確認하여 一同의 贊成을 얻은 후에 이를 행할 것, 會合에 관한 記錄은 一切 이를 남기지 않을 것 및 朝鮮獨立의 目的 達成을 위해 이들 事項의 勵行에 努力할 것, 同會合에는 鷄林이란 名稱을 붙일 것 등 諸般의 事項에 대해 協議를 하고 이로써 朝鮮獨立運動의 展開에 관해서의 具體的 活動方針을 協議 決定하고 이래 同年7月中旬頃까지의 사이에 4회에 걸쳐 右方針

에 立脚하여 각자 研究發表會를 열어 民族指導者로서의 相互知識의 向上을 圖謀하고

이로써 我 國體를 變革할 것을 目的으로 하여 그 目的事項의 實行에 關係 協議를 한 것이다.

右 被告人의 所爲는 治安維持法 第5條에 該當하는 犯罪라고 思料됨으로 刑事 訴訟法 第3百12條에 의해 主文과 같이 決定한다.

昭和17年 8月 14日

大板地方裁判所

豫審判事 鹿島重夫

〈參考資料 Ⅱ〉

判決

本籍 朝鮮全羅南道濟州邑三陽里2072番地

住居 大阪市東成區新今里南8丁目398番地

木村順太郎方

핸드백口金職工

姜 金 鍾 곤

晋山金鍾

大正6年12月27日生

右者에 대한 治安維持法違反被告事件에 대해 當裁判所는 檢事 高橋眞清 關與로 審理를 마쳐 다음과 같이 判決함

主文

被告人을 懲役2년에 處함

未決拘留日中 200日을 右本刑에 算入함

理由

被告人은 本籍地에서 태어나 3歲 때 父親을 잃고 母親의 손에 의해 貧困裡에 養育되며 昭和3年4月 (12歲 때) 그 母親과 함께 來阪하여 大阪市 猪飼野 尋常小學校 第3學年生으로 通學하다가 半年余만에 歸郷하여 普通學校 第4學年에 들어가서 第5學年을 修了함과 同時에 退學해서 母親이 있는 곳에서 家事를 돕고 있는 바 昭和11年4月 苦學의 目的을 갖고 再次 單身 來阪하여 이래 造花商店員, 新聞配達人, 핸드백口金職工 등의 職을 얻고 大阪基督教青年會英語學校, 日本大學大阪專門學校法科夜間部別科 등에서 공부하고 昭和15年1月 京阪商業學校夜間部第3學年에 入學하여 翌年 3月 同校를 卒業하였는데 昭和15年初頃부터 마르크스主義에 關心을 가지고 同年 4月頃부터 이것에 관한 書籍을 繙讀하기에 이르렀으나 일찍부터 朝鮮人으로서 内地人으로부터의 差別待遇를 느끼고 있었는데 加하여 朝鮮人이 内地渡航을 할 때 渡航證明書가 必要하다는 것, 조선에 의무교육제도가 시행되어 있지 않는 등 日本政府의 朝鮮人에 대한 差別的處置 및 日本人의 朝鮮人에 대한 侮蔑의 處遇의 事實을 聞知했던 것 등

에 의하여 漸次 民族의反感과 不滿을 깊이 갖고 있을 적에 때마침 昭和15年 4月下旬頃 일찍부터 朝鮮獨立을 希求하고 있던 同鄕青年 金奉珏 곧 岡田庄祐 를 알게 되어 同人으로부터 朝鮮獨立을 위해 蹶起하도록 煽動받자 이에 共鳴 하여 드디어 朝鮮民族에게 참다운 自由와 幸福을 賦與하기 위해서는 朝鮮으로 하여금 天皇의 統治權下로부터 離脱케 하여 새로이 朝鮮民族에 의한 獨立國家를 建設하는 길밖에는 없다고 思惟하기에 이르러 同人등과 함께 이 目的達成을 위해 活動할 것을 決意하여

一. 昭和15年5月初頃 大阪府中河内郡巽村西足代454番地の 上記 岡田庄祐方에서 同人 및 金丙穆 곧 金村丙穆, 高奉朝 곧 高山森造, 韓滿淑 곧 西原滿淑 등 4名과 會合하여 同人등과 함께 朝鮮獨立運動 展開에 관한 根本方針에 대해 密議를 거듭하고 난 끝에 朝鮮獨立의 目的 達成을 위해서는 우선 낮은 一般朝鮮人 大衆의 民族意識 啓蒙과 昂揚을 圖謀하여 獨立氣運의 醸成에 努力하여야 하며 이것은 우리들 朝鮮人 青年의 責任임으로 우리들은 그 指導者로서의 實力을 養成하기 위해 讀書會를 갖고 이것을 통해서 相互의 知識向上을 圖謀하여 이로써 朝鮮獨立運動의 指導者로서의 必要한 知識修得에 努力하여 窮極의 目的 達成에 盡瘁할 것 등을 協議 決定하여

二. 同月 中旬頃 大阪市 東成區猪飼野中5丁目 20番地の 金村丙穆方에서 前記 4名과 會合하여 上記 根本方針에 立脚, 그 위에 當面의 活動方針에 관해 協議한 끝에 東京의 朝鮮人 留學生이 그들을 가져 朝鮮獨立 目的 達成을 위해 必要한 事項에 관해 研究 討論하고 있음에 呼應하여 우리들도 각자 研究題目을 選擇, 專門의 研究하여 그 結果를 우리들의 會合에서 發表하여 意見의 交換을 하고 이로써 民族指導者로서의 實力養成에 노력하기 위해 먼저 「朝鮮의 前途」 「마르크스主義」 「宗教와 文學」 「新聞」의 四項目을 研究題目으로 하고 被告人 자신은 마르크스主義에 관해 研究하여 그 結果를 發表할 것을 決定하고 한편 우리들의 會合은 絕對 秘密로 할 것, 우리들의 會合에서는 朝鮮語를 사용할 것, 會合의 日時 場所는 미리 그 前의 會合 때 決定할 것, 새로이 會員을 늘릴 때는 人物을 確認하여 一同의 贊成을 얻은 후에 이를 加入시킬 것, 會合에 관한 記錄은 一切 이를 남기지 않을 것. 이 會合에는 鷄林이란 名稱을 붙일 것 등 諸般의 事項에 대해 協議를 이루어 이로써 朝鮮獨立運動 展開을 위해 具體的 活動方針을 決定하여 同年7月中旬頃까지의 4회에 걸쳐 前記 岡田庄祐方 및 金村丙穆方에서 右方針에 立脚하여 각자 研究發表會를 開催하여 民族指導者로서의 相互知識의 向上을 圖謀하여

이로써 我國體를 變革할 것을 目的으로 하여 그 目的事項의 實行에 關係 協議를 하였던 者로서 이는 犯意繼續에 關係되는 것으로 봄.

證據를 調査하건대 判示事實中 犯意繼續의 點을 제외한 나머지는 被告人의 當公廷에 있어서의 判示 同旨의 供述에 의해 犯意繼續의 點은 被告人의 短期間內에 同種 行爲를 反覆累行한 事跡에 비추어 分明함으로 判示事實은 모두 그 證明이 있는 것으로 한다.

法律에 비취 보건대 被告人의 判示所爲는 治安維持法 第5條 刑法 第55條 該當되는 바 그 所定刑 本件 行爲時 法인 昭和16年 法律 第54號에 의해 改正된 同法第2條에 정한 刑보다 무거움으로 治安維持法 附則 第2項 但書에 따라 右 行爲時 法 第2條所定の 刑에 의해 處斷하려고 所定刑中 懲役刑을 選擇하여 그 刑期範圍內에 있어 被告人을 懲役2年에 處하여 刑法第21條에 의해 未決拘留 日數中 200日을 右 本刑에 算入하는 것으로 함
따라서 主文과 같이 判決함

昭和17年 10月 12日

大板地方裁判所 第三刑事部

裁判長判事 富田仲次郎

判事 河村 澄夫

判事 鈴木 敏夫